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심리 순서 규정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69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심판사건의 심리순서 규정	3
2. 관계기관 의견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심판사건을 관장하는 데 반하여 심리의 순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심판사건의 종류 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기접수된 사건들을 미루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

다며 공표한 바 있음.

하지만 지난 3월 13일, 당초 예정에 없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먼저 하면서 현재는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음.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선고를 미룸.

결국,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짧은 단 50여일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내렸고, 이보다 앞서 접수된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심판은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이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8조).

Ⅲ. 검토의견

1. 심판사건의 심리순서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경우 순서대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리순서 및 접수순서와 달리 판단하게 된 사유의 요지 등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38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종국결정) ① (생 략)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36조(종국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심판기간) <u><신 설></u> <u><신 설></u>	제38조(심판기간·순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현행	개정안
<신설> (생략)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결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변경된 심리순서 및 접수순서와 달리 판단하게 된 사유의 요지 등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한다.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에 관한 사항¹⁾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²⁾, 심판순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1)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법원 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즉 직무기간은 그 경과에 따른 특별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한 훈시적 의의를 가질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도 심판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180일 이내에 심판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심판기간을 정

아니한바,

심판사건의 심리 및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 긴급성, 복잡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건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의 심리 순서 즉, 심판사건은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순서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의 요지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른바 심판사건의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사건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사건에 대한 선입선출

과한 심판의 효력이나 심판기간 경과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이 그 심판기간을 관철시키기 위한 특별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다.)

3) 매일신문, “탄핵사건 10건 계류…순서대로 짚어야 尹심판 인과관계 맞춰진다”, 2025년 1월 16일자 기사, 데일리안, “민주당, 與 ‘선입선출 원칙’ 주장에 ‘일상회복부터’”, 2025년 3월 18일자 기사 등 참조.

의 원칙을 명시하고,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하도록 하는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사건처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에 따른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를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결정서에도 관련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사건 당사자의 절차적 공정성 및 알권리 보장 측면과 사건처리 절차 강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 및 사건의 신속 처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같이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 순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461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⁴⁾이 계류 중에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461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2(심리의 순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판의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있는바,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여 선입선출의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고 있는바⁵⁾,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법원의 사건 처리 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 사건이 심리되도록 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관은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따라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고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인지는 재판장이 사건의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적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기본권의 내용, 사실관계의 복잡성, 사회에 미칠 파장의 정도, 사안의 성숙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접수된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내실 있는 헌법재판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